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비공식 번역



OECD 법적 수단

이 작업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출판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의견과 사용된 주장이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지도는 영토의 지위나 주권, 국제 국경 및 경계의 경계,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 권한 없이 무료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OECD** 공식 번역물이 아닙니다. 원문에 기초해 국문으로 번역 되었으며 공식 영문 및 불문 버전은 아래 **OECD**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egalinstruments.oecd.org>

각료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협약(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제 5조 b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공공조달 및 공공투자, 공공 거버넌스, 조세, 기업 거버넌스, 기업책임경영,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및 정책, 성평등, 청년, 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수립한 표준과 관련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사회적 경제는 정치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으며, 사회적 경제가 포용적인 사회와 건실한 지역사회 건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여건 조성, 쌍둥이 전환(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의 공정한 달성, 경제 순환성 강화의 초석 마련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며, 젠더 평등을 증진하고, 비공식 부문 고용 문제에 대응하고, 소외집단의 노동통합을 지원하고, 노동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사회적 경제는 그 활동모델과 사업모델의 성격상 충격에 대한 내성이 높아 경제와 사회의 복원력을 증진하며, 여러 중요한 경제사회 부문 및 보건과 사회서비스 등 여러 필수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의 효과성을 현저히 개선하고, 여러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강화하고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지역별 우선 전략 과제 추진에 보탬이 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의 전반적인(societal, 즉, 사회적 및/또는 환경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적 관행을 중심으로 지역적 뿌리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조직하며, 공공당국, 학계, 시민, 시민사회, 재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혁신을 추동하며, 사회혁신은 공정무역, 윤리적 금융, 순환경제 관행, 플랫폼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사회 전반의 새로운 모델을 뒷받침한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사회적 경제와 그 영향을 경제, 고용, 사회, 환경의 관점에서 확대하기 위한 국제 사례와 정책 지침을 발굴하고자 한다.

각국은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국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지침이 될 표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OECD는, 특히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지식을 개발해 왔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정책입안은 정부의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가 참여하며, 국가적 제도적 기본 틀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 권고문은 정부의 모든 층위와 관련성을 지닌다.

각료이사회는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지역경제고용개발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Action Programme on 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운영위원회가 제기한 안과 관련하여,**

I.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용어 및 내용의 정의는 국가, 지역, 지방별로 다양하나, 이 권고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 일부 국가에서 연대경제 및/또는 사회연대경제로 지칭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각종 협회, 협동조합, 상호조직, 재단으로 구성되며, 보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여기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지역사회 모임, 풀뿌리 모임, 자생적 모임과 그 외 비영리단체를 포괄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를 연대경제로 지칭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단체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 목표, 연대의 가치, 자본에 대한 인간의 우선성,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를 동인으로 한다.
- **사회적 경제 조직(social economy organisation)**은 일반적으로 위에 열거한 단체를 지칭한다.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단체 중, 사회 전반적 목표를 추진하며, 소유주의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목표의 지속 달성을 위해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단체를 의미한다.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사회적 문제와 사회 전반적 문제에 관한 새롭고 비용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서, 후생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새로운 수단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이해관계자와의 새로운 관계 등이 있다.

II.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이 권고문을 준수하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하 "준수국")은 만인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영향을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 모든 층위의 뒷받침을 받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도입한다. 상기 목표와 관련하여, 준수국은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 a. 경제와 사회의 각종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모든 (공공 및 민간부문) 이해관계자가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한다.
- b. 시민사회 모임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 모임이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 c.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홍보한다.
- d. 네트워크 구축, 부문 간 파트너십 개발, 지식 공유, 실천공동체를 촉진한다.
- e.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한다.

- a. 가능한 경우,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책 시행의 개선과 효과성 확보에 관한 각 정부기관과 각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 b. 사회적 경제 관련 계획의 설계와 시행에 있어, 과소대표집단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 c. 가능한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이 관련 정보, 자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 역할을 할 '원 스탑 서비스 센터(one-stop shop)'를 설치하고, 각급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d. 사회적 경제에서 젠더 평등을 강화하고 주류화하는 정책과 방안을 설계 및 도입하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사회적 경제 관련 모범 관행을 강조한다.
- e.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공조를 촉진하고 응집력과 효과성을 증진하며 공공정책과 각급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의 주류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 f.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핵심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같은 국제적 전략 목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역할을 주류화하고 기반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g. 가능한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각급 정부, 기업, 사회 혁신 주체, 교육기관 사이의 협력, 협업, 파트너십을 조성한다.

- h. 상공회의소 등 기타 제도적 기구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적극 협력하고 재계 전반과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3.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본 틀을 설계한다.

- a.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법적 기본 틀을 설계한다.
- b. 기존의 법적 기본 틀로 인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른 경제 주체 유형에 비해 불리함을 겪는 분야를 파악한다.
- c. 사회적 경제 조직, 그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합한 법적 형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형식을 인정하고 증진한다.
- d. 특히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관한 일치화(harmonization) 활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표시 및 인증 요건 또는 기준을 활용한 상호 인정 기회를 모색한다.
- e. 초국경 활동 및 국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정보 공유, 국제 협력, 규제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국제화 전략을 장려한다.
- f.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요가 변화함에 따라 법과 정책을 개선 및 개정하기 위한 필수 정기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질적 증거와 양적 증거,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평가에 반영한다.

4.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금융 및 자금 이용을 지원한다.

- a. 가능한 경우, 기업 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적 자금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b.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출, 보증, 벤처 자본, 설비 자금 조달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 주류 금융상품과 각급 지원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경험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 및 제도의 이용을 촉진한다.
- c.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도입하거나 구체적인 투자 준비 수요 파악과 대응을 위한 자금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직접 배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 역량과 투자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
- d. 윤리적 금융, 신용조합, 사회적 은행, 저축은행과의 협력, 그리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활용을 장려한다.

5.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a.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합한 공공 조달 참여 기회가 있는 경우, 해당 기회의 이용을 촉진한다.
- b. 명확한 국가 및 지방 조달 전략과 입법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사회 및/또는 환경 관련 내용 및 조항의 활용을 장려한다.
- c. 전문 훈련 등을 통해 (민간 및 공공부문) 조달 담당관의 기술과 역량, 그리고 시장에 관한 지식과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발전시킨다.
- d.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재계 전반과의 파트너십 추진을 통해 민간시장을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원천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 e.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신기술이 선사하는 여러 기회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 f.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진출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 지침 등 지원 자료를 개발한다.

6.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내부의 기술 및 사업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 a. 가능한 경우, 공적자금 지원 수단을 활용해 학교 및 대학 안팎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b.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적 기업가가 적정 비용으로 맞춤형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및 코칭(coaching)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c. 모든 지역(도시 및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맞춤형 능력 개발 및 사업 개발 지원 사업에 적정 비용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d.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사업 개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7.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을 장려한다.

- a. 공공 정책과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 측정을 위한 지표와 기준의 개발을 추진한다.
- b.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 당국으로부터 지원금 또는 계약 형식으로 지원받는 자원 중 일부를 사회적 영향 측정에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c. 사회적 경제를 위한 맞춤형 사회적 영향 측정 지침을 설계하고 배포하도록 지원한다.
- d.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시장가치 외에 비시장적 가치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분석과 후생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 평가를 개선한다.
- e. 전용 기금이나 전문 중개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등 그 밖의 자원을 동원해 사회적 영향 측정 실시 능력을 증진한다.

8.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데이터 생산을 지원한다.

- a. 데이터 수집과 생산 방법 및 지침을 홍보하고 여러 국제적 방식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국가, 지역/지방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비교 가능한 통계 정보를 생산한다.
- b. 기존 데이터와 기업통계등록부, 관측소 자료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 조사(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개시하고 전용 위성 계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식 통계에 포함된 사회적 경제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 c. 각종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례 조사, 대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작성한 등록부 등, 공식 기업통계등록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충 자료를 살펴본다.
- d. 통계 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가 통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한 공동 통계 생산을 장려한다.

9.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한다.

- a. 사회혁신 생태계의 출현과 확대를 촉진하는 요소를 포함해,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사회혁신에 관한 이해를 증진한다.
- b. (사회혁신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는) 수요 측면 방안과 (사회혁신의 양적,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급 측면 방안을 모두 포괄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 c. 각종 육성기관(incubator), 역량센터, 훈련, 공공당국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혁신을 증진해 실험적 시도와 확대를 장려한다.
- d. 사회혁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소외지역 및 주변부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 e. 지역사회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지의 사회혁신을 지원한다.
- f.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관행을 증진하는 사회혁신을 촉진한다.
- g. 녹색 전환 및 디지털화와 같은 의제를 포함해, 혁신정책 일반에 사회혁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h. 여러 사회적 경제 주체, 기업, 사회적 혁신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는 사회혁신을 지원한다.

III.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권고문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IV. 준수국에 대하여, 각급 정부에 이 권고문을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V. 준수국 외 국가에 대하여, 이 권고문을 고려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VI. 지역경제고용개발협력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다음을 지시한다.

- a.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분야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경제에 관한 정보 및 이 권고문 시행에 관한 경험을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b.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관한 활동과 최근 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권고문이 향후에도 관련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 c. 이 권고문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파악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데이터, 금융 서비스 이용, 시장 진출, 법적 기본 틀, 사회적 기업의 상호 인정, 사회적 영향 측정,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국제화에 관한 증거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 d. 준수국의 권고문 시행을 지원할 시행 도구 모음(tookit)을 개발한다.
- e. 이 권고문 도입 후 5년 이내에, 그 후에는 최대 10년 주기로, 이 권고문의 시행, 배포, 관련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